

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4. 22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4. 2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

- 제53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총무위원회 제6차회의(97. 5. 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김동언)

가. 개정이유

- 경기도 자치 12200-686(97.3.11.)호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표준(안)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제정

나. 주요골자

- 농촌지도소의 업무(안 제3조)
 -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·조정

- 농업생산증진과 안정적생산을 위한 우량종자·종축의 보급 등
- 농촌지도소의 소장직급 규정(안 제4조)
-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동조례안과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통합하여 한 개의 조례로 할 수는 없습니까?	○ 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 부천시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그것에 관한 세부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
○ 농촌지도관 또는 생활지도관은 사무관입니까, 서기관입니까?	○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
○ 안 제2조 농촌지도소의 위치가 맞습니까?	○ 네, 맞습니다.

4. 토론요지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번호	제255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7. 4. 2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경기도 자치 12200-686(97. 3. 11.)호로 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표준(안)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 제정

2. 주요골자

- 농촌지도소의 업무(안 제3조)
 - 농촌지도사업종합계획 수립·조정
 - 농업생산증진과 안정적생산을 위한 우량종자·종축의 보급 등
- 농촌지도소의 소장직급 규정(안 제4조)
 -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

부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농업 발전을 통한 주민 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농촌지도소(이하 "지도소"라 한다)를 둔다.

제2조(위치) 지도소 위치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4-1번지에 둔다.

제3조(업무) 지도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·조정
2. 농업생산력 증진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·종축의 보급
3. 농촌청소년 및 농업경영인 등 후계인력 조직육성·지도
4. 지역농업의 개발 및 농촌생활개선지도

5. 농업경영 개선지도

6. 농·축산물의 생산기술과 품질향상 지도

7.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도

8. 가축질병 예방·방역 기술지도

9. 기타 농업·농촌발전을 위한 새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등 농촌지도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도
시민의 취미생활에 대한 정보교육지도

제4조(소장) ①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.

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도소 운영에 관한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지도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,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